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중개사업 등록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20 일
신청인	상호(명칭 및 대표자 성명)	사업자(법인)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전화번호
신청내용	운송플랫폼 명칭	
	예정 사업구역(최소 행정구역단위 명기)	
	주요 부가서비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18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3조의16제1항에 따라 플랫폼중개사업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 2. 기존 법인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나. 면허신청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결정서 사본 3. 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어야 합니다) 나. 법인을 설립하려는 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다. 설립하려는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식의 인수 또는 출자의 상황을 적은 서류 4. 플랫폼중개사업에 사용할 운송플랫폼에 관한 서류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수수료 30,000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신청인이 기존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직접 제출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수 리	→	통 보
신청인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